최 신 판 례 예 규

Marketing Tax consulting

대표이사의 배당포기로 인해 초과배당을 받게 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등 주주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

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 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 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§41의2의 초 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 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-1170, 2023.03.09

▮질 의

-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
-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 세법 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 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
▮회 신

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 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 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,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 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 다.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 당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사업장에 해당 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자등록을 하여야 함

사전법규부가-410, 2023.08.17

▮질 의

- ◇◇ 대학교 병원1)(이하 "신청법인")은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'22.11월 ◆◆임상시 험센터2)(이하 "쟁점센터")를 완공하여
- 1) □□북도 ■■시 ◎◎구 1순환로 776
- 2) □□북도 ■■시 ☆☆구 △△읍 △△생명로 77
- '23.3월 □□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 가를 받았으며,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실험 실시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절차가 진행 중임
- 쟁점센터는 '23년 하반기 개소예정으로 신청법인의 사용인이 관리 운영하며,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용 역을 제공하고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음

질의

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

▮회 신

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

2024 · 04 · 10 www.eAnSe.com 11

보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
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 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 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

서면국제세원-866, 2023.05.31

▮질 의

-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 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 (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)에서 발급하는 FPI(Foreign Portfolio Investor)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
-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, 한 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

질의

•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 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

회 신

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 우, 동 세액이「한・인도 조세조약」제13조 [양도소 득]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「소득세법」제 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「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」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, 「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07호)」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

서면법규부가-1610, 2023.03.24

▮질 의

• 장애인 등을 위한 청각 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

▮회 신
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부 가가치세제과-209, 2023.3.13.)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.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09, 2023.3.13.

「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「조세특례제 한법」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 적용되는 것이며,「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07호)」시행일부터 적 용되는 것입니다.